	표준번호(Sta.No.) : ALT-A-050 개정일자(Rev.Date) : 2014.6.2		
	개정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7/12


###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제 14 조(임직원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각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법규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5 조(임직원 의무)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자율준수편람에 개정·반영하여야 한다.

	표준번호(Sta.No.) : ALT-A-050	개정일자(Rev.Date) : 2014.6.2
	개정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8/12

**제 16 조(교육프로그램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활동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교육자료를 개발의외·제작 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 관련법규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무분야의 임직원 에 대해서는 반기당 2시간 이상의 외부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4. 자율준수 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7 조(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 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점검사항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기타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사항

**제 18 조(제보자 시스템)**

제보자 시스템은 회사의 구성원이 관련법령, 사규 등에 위반되거나 위반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자율준수 업무절차에 따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보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항들은

	표준번호(Sta.No.) : ALT-A-050 개정일자(Rev.Date) : 2014.6.2
	개정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9/12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위반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율준수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을 포함한다.

그 구체적인 위반 사항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위반행위
2. 부정한 거래행위에 의한 구매행위
3. 불법 내부자 거래
4. 위법한 접대와 선물
5. 기타 위에 준하는 사규 위반사항

**제 19 조(제보절차)**

1. 회사의 임직원이 제 18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인사총무팀에 제보할 수 있다.
2. 제보는 윤리경영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의하여 강제되지 않는 한 비밀로 보장된다.
3. 위반 사항을 제보 받은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된 내용이 음해할 목적으로 조작되었는지 먼저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음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율준수관리자는 재경본부(인사총무)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재경본부(인사총무)에서는 조사 후 반드시 조사 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재경본부(인사총무) 조사에 의해 위반 사항이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즉시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난 후 이에 대해 대표이사께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번호(Sta.No.) : ALT-A-050 개정일자(Rev.Date) : 2014.6.2
	개정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10/12

**제 20 조(제보자 보호)**


1. 제보자가 제보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불이익이라 함은 외부 거래업체와는 거래관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고, 내부 직원은 승진, 급여 등 처우 상의 불이익, 인사평가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타의에 의한 사임, 원하지 않는 직무부여, 전근 등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을 포함한다.
2. 제보자가 제보를 함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입었다고 믿는 경우 서면으로 적절한 구제를 요구하는 소명을 할 수 있다.  
이 서면 소명서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 소명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자율준수관리자는 이를 검토하고, 검토 후 즉시 제보자가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조사가 끝난 후 자율준수관리자는 조사를 토대로 보복성 불이익이 제보자에게 가해졌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취할 수 있다.

**제 21 조(제보자에 대한 포상)**

1.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구성원의 내부 제보로 인하여 불법행위 방지, 비용경감, 경영위험 회피 등 회사에 현저한 공헌이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제보자의 요청이 있다면 포상자의 신원과 포상의 내용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

**제 22 조(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규 위반자로 적발된 임직원, 디슈머,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표준번호(Sta.No.) : ALT-A-050 개정일자(Rev.Date) : 2014.6.2
	개정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11/12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되, 아래와 같이 징계토록 한다


1. 임직원에 대한 징계
  - 가.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에 대해 제재위원회에 징계를 상정해야 한다.
  - 나. 제재위원회에 상정된 징계사항은 당사 징계규정에 의거 진행 하되, 일반징계보다 무거운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디슈머에 대한 징계
  - 가. 자율준수관리자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디슈머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디슈머 징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나. 당사의 마케팅 비즈니스 매뉴얼 및 DIO(Disumer Independent Office)관리규정에 따라 디슈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토록 한다
3. 협력회사에 대한 징계
  - 가. 관련 거래업체와는 “계약서” 조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토록 한다

**제 23 조(문서관리)**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에 분류 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 24 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윤리경영 홈페이지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번호(Sta.No.) : ALT-A-050 개정일자(Rev.Date) : 2014.6.2
	개정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12/12

**제 25 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제 26 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 27 조(유권해석)**

공정거래 관련법규와 관련된 업무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재경본부(인사총무)와 상의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타 규정과 관계)**

공정거래자율준수 규정은 회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6월 16일에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6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